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임용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노원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처	임용분야	인원	성별	직무내용
건강증진과 (노원 평생 건강관리센터)	간호사	라급 (1명)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 지역주민 건강교육 및 상담 - 기간제근로자 및 센터직원 교육계획 및 운영 -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 교육자료 개발 및 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 ○ 기타 보건소 관련 업무 지원 등

2. 임용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1)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2)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로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심사

-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 2) 2차 면접시험 합격자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 결격사유 조희, 건강진단 등에 따라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합격자 선발
-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에 의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4. 응시자격(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응시자격(자격기준)

- **우대조건**: 보건기관 근무 경력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선발분야 응시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

구분 (등급)	임용 분야	응시 자격 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6.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등

가.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조건 : 주 35시간 근무

다. 보수수준 : 연봉 34,320천원(수당 별도)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라. 공무원 연금법 적용, 건강보험, 고용보험(선택) 가입

7. 시험일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1. 4. 19. / 개별통지)

나. 제2차 시험 : 면접심사

1) 일 시 : 2021. 5. 3.(예정)

2) 장 소 : 노원구청 5층 기획상황실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5. 10.예정(개별 유선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21.4.12.(월)~4.15.(목)

나. 장 소 : 노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평생건강팀(인산빌딩 6층)

다. 방 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직접 방문제출 ※ 우편접수 불가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라.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7호)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바. 임용분야 면허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각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사본 제출 가능, 최종합격시 원본제출)

자.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차. 응시수수료 : 라급(5,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고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1.4.5.(월)~4.15.(목), 10일 이상 (※ 휴일포함)

나. 공고방법 : 노원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등

11.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복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자. 원서 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방문 접수 바랍니다.

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 기타 문의 : 노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2116-0763)